

2017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(제조업)

선정항목	배 점	비 고
● 공통 적용 항목 : ①~⑧번	90점	○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첨부파일 -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, 위험성평가표 및 실시규정(계획서) ※ 위의 3가지 파일이 모두 첨부된 온라인 신청 건만 접수되며 미 첨부된 파일이 있을 경우 반려됨.
● 지역 자율 항목 : ⑨번	10점	
☆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	우선선정	○ 대상 : 2017년 공생협력프로그램 사외 협력업체 ※ 부산에 소재한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됨.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5점	○ 대상: 안전보건공단 보조금 지원이력이 없는 신청사업장
② 재해율 상위 10대 위험업종 (부산지역 제조업사업장 산재통계 분류 상 중업종 기준)	최대 20점	1. 유리 제조업 20점 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8점 3.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6점 4. 금속재료품 제조업 14점 5. 선박 건조 및 수리업 12점 6. 펄프·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0점 7. 식료품 제조업 8점 8. 기타 제조업 6점 9. 기계기구 제조업 4점 10. 수제품 제조업 2점
③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	10점	-
④ 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사업장 (고령자, 산재장애인, 외국인)	최대 10점	○ 취약계층 근로자 1명 당 2점씩 최대 10점 배점 ○ 아래 증빙파일 첨부 시 배점(기타 파일 배점 없음) - 고령자 : 고용·산재보험 명부(국민연금, 건강보험 해당없음), 2016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중 택일 ※ 대상자 : 만 55세 이상 (1961년 출생자까지만 배점) - 산재장애인 : 근로복지공단 산재장애 등급 서류 - 외국인 : 고용·산재보험 명부(국민연금, 건강보험 해당없음),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사본 중 택일 ※ 고용·산재보험 명부는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'5' 또는 '6'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배점
⑤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협의로 인정한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사업장(노사문화대상 일학습병행제 등)	10점	○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시달한 우수기업 사업장에 배점 ※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확인서 첨부 시 배점 없음.
⑥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 또는 공단 기술지도 사업장	10점	○ 2017년도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자료 파일 첨부 시 배점 ※ 시정지시서, 고용노동부 과태료 납부고지서 사본 중 택일 ○ 2017년도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사업장에 배점
⑦ 천장크레인(호이스트 제외), 지게차 보유사업장	최대 10점	○ 천장크레인 또는 지게차 1대 당 2점씩 최대 10점 배점 ○ 아래 증빙파일 첨부 시 배점(기타 파일 배점 없음) - 천장크레인 : 안전인증서 사본, 안전검사 필증 스티커 사본, 안전검사서 사본 중 택일 ※ 지원대상 선정 시 검사 유효기간 이내만 배점 - 지게차 : 건설기계등록증, 매매계약서 사본 중 택일 ※ 지게차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시 배점 없음.
⑧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또는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이수사업장	5점	○ 대상 : 2017년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※ 2017년도 이전에 교육 이수한 경우 배점 없음.
⑨ 부산지역 재해다발 핵심타깃 관리대상 업종 (위의 2번 항목과는 별도로 배점함) - Micro Target : 기계기구 제조업(5~19명) - 재해다발 상위 8대 중업종 중 최근 5년간 재해자수가 높은 업종 순서로 차등 배점	최대 10점	1. 기계기구 제조업(근로자수 5~19명 사업장) 10점 2. 기계기구 제조업(그 외) 8점 3.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8점 4. 선박 건조 및 수리업 6점 5.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6점 6. 식료품 제조업 4점 7. 화학제품 제조업 4점 8. 고무제품 제조업 2점 9. 기타 제조업 2점

※ 주의 사항

1. 신청 시 첨부한 증빙파일 내용에 거짓이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추후 클린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.
2.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자수, 업종, 재해율 등은 공단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 기준에 따라 반영함.
3. 동점사업장은 위 항목 중 ①→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→⑧→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함.
4. 위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추후 공단 본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5. 클린지원 후 10년 경과한 사업장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최초 지원사업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선정함.